

199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93

제출년월일 : '99. 9.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 성립이후 발생한 국도비 변경내시분, 수해 복구사업과 필수경비의 반영을 위하여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1999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안의 총규모는 96,965백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대비 3,782백
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48백만원이
증가한 89,301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4백만원이 증가한
7,664백만원임

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지방세 274백만원, 지방교부세 96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2,610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이 200백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3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경상예산 199백만원, 사업예산 3,438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예비비 등 1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5백만원, 사업예산 0.6백만원, 재무상환
12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